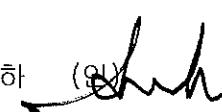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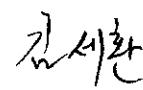


학 칙 입 안 서

1. 학 칙 명	학칙 제8조(학기)		
2. 부 서 명	학생취업처		
3. 입안형태	제정 () 전부개정 () 일부개정 (○) 폐지 ()		
4. 개정사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등록금의 반환)의 ②항 및 별표에서 자퇴 또는 제적 학생의 등록금의 반환 기준(반환사유 발생일)을 학기개시일로 명시하고 있어 법령과 학칙의 일치를 위하여 학칙개정이 필요함.		
5. 주요내용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등록금의 반환)의 ②항 및 별표에서 자퇴 또는 제적 학생의 등록금의 반환 기준(반환사유 발생일)을 학기개시일로 명시하고 있음. 2. 학생의 장학금의 반환 기준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3. 학칙 제8조(학기)의 ②항에서 제2학기를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기개시일이 개강일로 운영되고 있음. 4. 자퇴 및 제적 학생의 등록금 및 장학금의 반환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학칙의 개정이 필요함.		
6. 참고사항	관련 규정		
	관련 행정부서 합의	교무혁신처 및 사무처와 협의 완료	
	담당자		
불임 : 1. 개정안(신·구조 문대조표) 1부.. 2. 관련 법규 및 학칙 조문 1부.			
2022년 3월 24일			
입 안 부 서		관 련 부 서	
소 속 : 학생취업처 직 위 : 처장 성 명 : 서승하 ()		교무혁신처	사무처
			

교무혁신처장 귀하

[불임 1]

[신 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학기)	<p>① <생략></p> <p>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u>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u></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u>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u></p>	

[붙임 2]

관련 법규 및 학칙 조문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등록금의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칙 제8조(학기)

-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3. 타 대학 학기 개시일 관련 학칙

가. 신구대학교 학칙

제8조(학기) ① 학기는 2학기부터 4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학기

가.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 학기별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 <개정 2021.3.1.>

③ 3학기 및 4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또는 실습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조(학기) ①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개정 1999.01.25., 2020.12.30., 2022.02.14.>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정 1999.01.25>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단,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매 학기별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 <개정 1999.01.25., 2020.12.30., 2022.02.14.>

다. 유한대학교 학칙

제8조(학기) ①학기는 2학기 또는 유연학기, 다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20.3.1.) 1. 2학기제의 학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 가.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단,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매 학기별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개정 2015.8.24., 2020.3.1., 2021.3.1.)

학 칙 입 안 서

1. 학 칙 명	신안산대학교 학칙		
2. 부 서 명	기획처		
3. 입 안 형태	제정 () 전부개정 () 일부개정 (●) 폐지 ()		
4. 개정 사유	■ 2023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따른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5. 주요 내용	■ 2023학년도 대학기본계획에 따른 제4조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6. 참고 사항	관련 규정		
	관련 행정부서 합의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붙임 : 제정안 1부 또는 개정안(신·구조 문대조표) 1부.

2022년 4월 13일

입 안 부 서	관 련 부 서		
소 속 : 기획처 직 위 : 처장 성 명 : 오 혁 수 (인)			

교무혁신처장 귀하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개정안			개정 사유
	계열	학과	입학정원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기계과	65	기계공학전공	35
	전기과	80	전기공학전공	40
	스마트파키징과	40	스마트파키징전공	30
	컴퓨터정보과	40	소방안전관리전공	30
	멀티미디어컨텐츠과	80	자동화시스템전공	30
	건축과(3년제)	60	건축과	35
	바이오생명과학과	65	경영학과	35
	소방안전관리과	40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과	70	경호경찰행정학과	80
	아동보육과	40	아동보육과	30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호텔경영영업과	80	호텔조리과	60
	여행컨텐츠전공	40	호텔외식카페창업과	30
	세무회계과	40	반려동물과	40
	경영학과	40	동물보건과	30
	경호경찰행정학과	120	바이오생명과학과	30
	호텔조리재빨리과	140	실내디자인과	30
	제과제빵전공	35	시각디자인과	30
	반려동물과	35	해어디자인전공	30
	산업디자인과	65	메이크업전공	30
	제품전공	35	토털뷰티전공	30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헬튼출판미디어과	35	예체능	50
	실내디자인과(3년제)	70	실용음악과	40
	뷰티디자인과	110	연예마니지먼트과	30
	공연음악과	70	스포츠지도과	60
	실용댄스과	35	웹디자인과	30
	스포츠지도과	40	영상콘텐츠과	35
	연예매니지먼트과	40	웹툰출판미디어과	30
	합계	1,500	합계	1,050

학 칙 입 안 서

1. 규 정 명	학칙		
2. 부 서 명	교무혁신처		
3. 입안형태	제정 () 전부개정 () 일부개정 (V) 폐지 ()		
4. 개정사유	제52조의2(교무회의 구성 및 소집) - 관련 규정 적용 제56조(교직원) - 관련 규정 제정에 따른 적용		
5. 주요내용	제52조의2(교무회의 구성 및 소집) - 기존 운영 규정 적용 제56조(교직원) - 특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른 교원의 추가 지정		
6. 참고사항	관련규정	교무회의 규정, 특임교원인사규정	
	관련 행정부서 합의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붙임 : 제정안 1부 또는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1부.			
2022년 4월 21일			
입 안 부 서		관 련 부 서	
소 속 : 교무혁신처 직 위 : 처장 성 명 : 김 세 환 <i>김세환</i>			

기획처장귀하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2조의2(교무회의 구성 및 소집)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교무회의는 본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교무회의는 본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u>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u></p>	관련 규정 적용
제56조(교직원)	본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교원과 조교 및 기타 행정직원을 둔다.	본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u>특임교원</u> 의 교원과 조교 및 기타 행정직원을 둔다.	관련 규정 제정에 따른 적용

학 칙 입 안 서

1. 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2. 부서명	교무혁신처			
3. 입안형태	제정 () 전부개정 () 일부개정 (V) 폐지 ()			
4. 개정사유	제6조의2(전과)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8조(휴학구분)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9조(휴학철자)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10조(귀향신고의무)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13조(자퇴)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24조(타과 교과목 수강) - 타과 교과목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도록 운영 (종장기 발전계획 세부실행과제) 제25조(교육과정)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26조(수업시간)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27조(시간강사) - 강사법 제정에 따른 시간강사 명칭 변경 및 관련 규정 운영에 따른 적용 제29조(계절학기 설강) - 관련 규정 운영에 따른 적용 제30조(휴강 및 결강)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33조(출석) - 출석 인정 사유 확대 및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34조(무게출 장기결석자 처리)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35조(평가시험) - 정기시험 운영방식 변경 제39조(부정응시)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43조(성적의 공시 및 정정) - 외래강사 미 운영에 따른 항목 삭제 제44조(성적제출)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48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 NCS 교과목 미 운영에 따른 항목 삭제 제53조(발급사무)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57조(학적부 정정) -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5. 주요내용	상 동		
	6. 참고사항	관련규정	강사인사규정, 계절학기에 관한 운영 규정	
		관련 행정부서 합의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불임 : 제정안 1부 또는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1부.

2022년 4월 21일

입 안 부 서	관 련 부 서		
소 속 : 교무혁신처 직 위 : 처장 성 명 : 김 세 환 <i>김세환</i>			

기획처장귀하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의2 (전과)	<p>① 학칙 제19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승인을 얻어 <u>교무입학처</u>에 제출한다.</p> <p>②-⑧ <생략></p>	<p>① 학칙 제19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승인을 얻어 <u>교무혁신처</u>에 제출한다.</p> <p>②-⑧ <현행과 같음></p>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8조(휴학구분)	<p>휴학은 일반 및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p> <p>1.-3. <생략></p> <p>4.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교무입학처</u>에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 할 수 있다.</p> <p>5. <생략></p>	<p>휴학은 일반 및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교무혁신처</u>에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 할 수 있다.</p> <p>5. <현행과 같음></p>	"
제9조(휴학절차)	<p>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도서관, <u>학생처</u>, 사무처, 예비군대대)를 경유하여 <u>교무입학처</u>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p> <p>②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한 경우는 병적증명서를 <u>교무입학처</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4.-5. <생략></p> <p>③ 일반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 휴학원을 <u>교무입학처</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도서관, <u>학생취업처</u>, 사무처, 예비군대대)를 경유하여 <u>교무혁신처</u>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p> <p>②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한 경우는 병적증명서를 <u>교무혁신처</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4.-5. <현행과 같음></p> <p>③ 일반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 휴학원을 <u>교무혁신처</u>에 제출하여야 한다.</p>	"
제10조(귀향신고의무)	①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u>교무입학처</u>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u>교무혁신처</u> 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자퇴)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u>학생처</u> , 사무처, 도서관, 예비군대대)를 경유 <u>교무입학처</u> 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u>학생취업처</u> , 사무처, 도서관, 예비군대대)를 경유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타과 교과목 수강)	타과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 할 수 있다.	<삭제>	타과 교과목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도록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실행과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5조 (교육과정)	<p>① <생략></p> <p>② 교육과정은 각과 학과장이 작성하여 학년도 개시 2개월 전에 <u>교무입학처</u>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p> <p>③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교육과정은 각과 학과장이 작성하여 학년도 개시 2개월 전에 <u>교무혁신처</u>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26조 (수업시간)	<p>① <생략></p> <p>② 학과장은 수업시간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행하고 공고된 수업시간표는 <u>교무입학처장</u>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학과장은 수업시간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행하고 공고된 수업시간표는 <u>교무혁신처장</u>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p> <p>③ <현행과 같음></p>	"
제27조(사관강 사) 강사	<p>(시간강사)</p> <p>① 시간강사의 초빙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한다.</p> <p>②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를 우선 한다.</p> <p>③ 시간강사는 학과장이 교무입학처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강의에 임하도록 한다.</p>	<p>(강사)</p> <p>⊕ <u>강사의 초빙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u></p> <p>② <삭제></p> <p>③ <삭제></p>	강사법 제정에 따른 시간강사 명칭 변경 및 관련 규정 운영에 따른 적용
제29조(계절학 기 설강)	<p>① <생략></p> <p>②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계절학기에 관한 운영규정</u>」에 따른다.</p>	관련 규정 운영에 따른 적용
제30조(휴강 및 결강)	<p>① <생략></p> <p>② 공·사적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휴강계와 보강계를 <u>교무입학처</u>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사적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휴강계와 보강계를 <u>교무혁신처</u>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33조(출석)	<p>① <생략></p> <p>② 다음의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병사관계(<u>신체검사</u>)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한다. 3. <생략> 4.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에 참가한 학생은 <u>학생처장</u>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5.-7. <생략> 8. 법정전염병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u>출석인정</u> 한다. 9.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의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한다. 3. <현행과 같음> 4.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에 참가한 학생은 <u>학생취업처장</u>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5.-7. <현행과 같음> 8. 법정전염병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u>출석으로</u> 인정한다. 9.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u>출석으로</u> 인정한다. 	출석 인정 사유 확대 및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4조(무계출 장기결석자 처 리)	각 교과담당교수는 작성하여 <u>교무입학처</u> 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교과담당교수는 작성하여 <u>교무혁신처</u> 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부서 조직개 편에 따른 부서명 칭 변경
제35조(평가시 험)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 추가시험으 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시험 및 기말 시험을 말하며, <u>시험실시 1주일 전에 시 간표를 공고하여 전 교과목에 걸쳐 시험 한다.</u> 2. <생략> 3. <생략>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 추가시험으 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시험 및 기말 시험을 말하며, <u>해당 수업시간에</u> 시행한 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정기시험 운영방 식 변경
제39조(부정응 시)	① <생략> ② 접수된 답안지는 <u>학생처</u> 에 인계하여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에 의거 징계한 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접수된 답안지는 <u>학생취업처</u> 에 인계 하여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에 의거 징 계한다.	행정부서 조직개 편에 따른 부서명 칭 변경
제43조(성적의 공시 및 정정)	①-② <생략> ③ 외래강사의 성적도 학과장의 책임 하 에 동일하게 행한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외래강사 미 운영 에 따른 항목 삭제
제44조(성적제 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 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교무입학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 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부서 조직개 편에 따른 부서명 칭 변경
제48조(입대휴 학자의 성적인 정)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상을 수강 후 입대한 학생의 성적은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해당학기 성적 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NCS기반 교과 목의 경우 미실시 직무능력평가는 해당 학기에 기 실시한 직무능력평가의 평균 점수로 대체한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상을 수강 후 입대한 학생의 성적은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해당학기 성적 으로 인정할 수 있다.	NCS 교과목 미 운영에 따른 항목 삭제
제53조(발급사 무)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 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 는 <u>교무입학처</u> 에서 발급하며 학생증, 통 학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학생처에서 발급한다. 1.-11. <생략>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 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 는 <u>교무혁신처</u> 에서 발급하며 학생증, 통 학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u>학생취업처</u> 에서 발급한다. 1.-11. <현행과 같음>	행정부서 조직개 편에 따른 부서명 칭 변경
제57조(학적부 정정)	① 다음 각 호의 10이 학적부와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을 첨 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u>교무 입학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10이 학적부와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을 첨 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u>교무 혁신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